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안 제1조~안 제7조, 별표)

- 1) 우리 처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 식약처 소관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
- 3)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
-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을 하여야 함
- 5)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의무화 함
  -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함
  - 우리 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소관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11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의료기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나. 공익신고의 접수절차 마련(안 제8조~안 제12조, 별지 제1호~5호서식)

- 1) 공익신고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하며,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2) 방문 접수 시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3)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기재사항)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 공익신고 취지와 이유 등

#### 다. 공익신고의 처리절차 마련(안 제13조~안 제16조, 별지 제6호~9호서식)

- 1) 공익신고 조사는 법률 소관부서 업무관련 공무원 등이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직접 접수) 조사 종결 후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통보
  - (권익위 이첩 신고)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권익위에 결과 통보
- 2) 직접 접수 또는 이첩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또는 권익위와 협의하여 이송가능

3)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사례 명확화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인 경우,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

4)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

- 공익신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안 제17조~안 제25조)**

- 1)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성명·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며,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2)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도록 함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해당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0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약처 소관 공익침해행위”란 별표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위반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①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는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처리한다.

② 공익신고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하고, 별표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소관부서(이하 “공익신고 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 및 공익신고 처리부서(이하 “감사담당관 등”이라 한다)는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 등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직원을 대상

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8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감사담당관실 내 설치된 고충 상담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의 공익신고의 방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등을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감사담당관 등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감사담당관 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3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감사담당관 등은 식약처 소관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사항(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소관 부서 업무관련 공무원 또는 법령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후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 등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감사담당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감사담당관 등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식약처 소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5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4.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6.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8.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9.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5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

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과 관련하여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준용한다.

③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7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법 제30조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자 보호)**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천서를 이용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일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과건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정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증대한 경제적 손해

**제22조(협조 등의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장 보칙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4. 식품안전기본법
5. 식품위생법
6. 약사법
7.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8. 의료기기법
9. 축산물 위생관리법
10. 화장품법
1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